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2. 9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1. 13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0. 11. 13.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(2020. 12. 9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아동청년과장 류필상

가. 제안이유

청소년시설의 사용료·강습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설운영의 질을 개선하고 청소년 복지 육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법체계에 따른 개정(안 제3조 및 제7조)
- 2) 법제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(안 제7조)
- 3) 예산·회계에 필요한 사항의 적용 규칙 명확화(안 제8조)
- 4)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인상(안 제7조 제1항 관련[별표])

3. 검토보고 (조광현 전문위원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에 근거하여, 2009.12.3 제정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규정한 마포구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료는 제정한지 10년이 넘어 현재의 물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그 간의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구립 청소년 시설 사용료·강습료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소년의 욕구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영역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.

○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리구에는 서울시수련관 1개소, 문화의집 3개소로 총 4개소의 청소년시설이 있는데, 사용료·강습료 관련 규정은 사용료는 체육관, 탁구장, 헬스장, 당구장 등이고, 강습료는 외국어, 음악, 정보과학, 문예 등입니다. 인상금액은 인근 자치구인 용산구, 은평구, 중구와 비슷한 금액으로 이들 자치구는 2016년도에 사용료 및 강습료를 인상하였습니다. (표 1), (표 2)

○ 검토의견입니다.

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·강습료 인상은 주민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절차적으로도 하자 없이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. 2020.10.15.부터 11.4까지 20일간 공고한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, 공공 요금 인상 시 사전절차인 “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” 심의도 지난 2020.8.4. 개최하여 적법

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다만,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시설이용자 및 주민에게 사용료 및 강습료 인상 요인을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이용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